

<p>고, 또 구역 내에는 78동의 주거용 건물이 있으나 평수가 적은 소궤지가 대부분이고 지상건물도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으로, 지역 내에는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.</p> <p>○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,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%, 건물은 82.4%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,</p> <p>○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9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위 치 : 노원구 월계동 794, 산 3-1 ○내 용 · 면 적 : 1,621,000㎡→1,623,809㎡(증 2,809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 ·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은 노원구 월계동 794와 산 3-1에 있는 기존 월계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면적 1,621,000㎡를 1,623,809㎡(증 2,809㎡)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, ○본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공원과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 최소면적(6,600㎡)에 미달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해제될 2,247㎡를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시키고, ○대신 자연녹지 상단 계획도로 월편에 있</p>	의안 번호	59	<p>는 자연녹지 3,120㎡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공원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은 현지확인후 처리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1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 3. 주요요지 ○위 치 : 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 ○내 용 ·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51,400㎡) · 준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3,600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·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51,400㎡와 준주거지역 3,600㎡의 합정동 지구중심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이 지역의 현황과 여건으로 보아 중심기능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,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 결정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 ※참고 : 일반상업지역 결정예정지 도면을 보면, 합정동 378-13 일대가 요철현상을 이루고 있어 인접 배후도로까지 상업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현지확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2</td> </tr> </table>	의안 번호	61	의안 번호	62
의안 번호	59						
의안 번호	61						
의안 번호	62						